기숙사 이용 서약서

과정명		교육기간	
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
○ 기숙사 이용시 준수사항

- 교육생 상호간,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예의없는 행위, 폭언/폭력 행위 금지
- 타인 소유 물품에 대한 절도 행위 금지
- 흉기, 음란물 등 유해한 물품의 소지/반입 및 도박 등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금지
- 기물 및 시설에 대한 망실/유기/파손 행위 금지(입소시 시설유지 보증금 2만원 납부)
-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/복용, 기숙사 각 호실 및 건물 내부에서의 흡연/음주 행위 금지
- 외출 후 인원 점검시간(매일 22:00) 전 미복귀 행위, 외부인의 기숙사 입실 유도 행위 금지 (고교위탁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 및 주의 조치)
- 6층 휴게실 이외에서의 음식 조리/취식 행위 금지(사용 후 정리정돈 필수)
- 고성 방가, 쓰레기 방치,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타인 생활 환경 저해 행위 금지
-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분리수거 미실시 행위 금지
- 수업 시작 이후 종료시까지 특별한 용무없이 기숙사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
- 기타 생활규칙 위반 및 관리자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무질서 유발 행위 금지

○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

- 상기 준수사항 위반시 위반사항의 경중에 대해 교무회의를 통해 판단하고, 즉시 퇴소/경고/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다.(주의2회=경고1회, 주의6회=경고3회=퇴소)
- 상기 열거된 금지행위 위반 및 본인 부주의로 인해 교육생에게 발생하는 모든 민/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교육기관은 일절 책임지지 않으며, 특히 기물/시설에 대한 망실/유기/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.

※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생 생활지도, 기물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의 목적으로 상시 기숙사 각 호실에 출입할 수 있다.

○ 기숙사 미운영 및 식사 미제공

-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별도의 기숙사 운영 중단 일정을 정하여 미리 공지합니다.
- 식사는 훈련 실시일에만 제공되며, 훈련 미실시일에는 식사제공을 하지 않습니다.

본 훈련생은 상기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였으며, 기숙사 생활 규칙을 준수하고,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에 대한 위반 및 불이행시 관련 절차에 의한 훈련기관의 조치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 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보호자 : (인) * 일반고 위탁훈련생 및 미성년자만 해당

(재)한국직업능력교육원

[별지 2호 서식]

기숙사 이용 신청서

과정명		교육기간	
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
상기 본인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이용함에 따라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50조 6호에 의거하여 단위기간 훈련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
* 개인 상호간의 식권(밀카드) 양도/양수 행위는 금지합니다.

202 년 월 일

(이용일자 : 202 년 월 일 부터)

본 인 : (인)

보호자 : (인)

* 보호자 서명은 일반고 위탁훈련생 및 미성년자만 해당